



고 소 장(예시 / 횡령죄)

1. 고소인

성 명	김 갑 동	주민등록번호	6△△△△ - ×××××××	
주 소	서울 00구 00길 00			
직 업	회사원 사무실 주소	서울 00구 00길 00		
전 화	(휴대폰) 010-100-0000	내폰) 010-100-0000 (자택) 02-100-0000 (사무실) 02-200-0000		
이메일	kimgd@��.co.kr			

2. 피고소인

성 명	이 횡 령		주민등록번호	5 \(\triangle \
주 소	서울 00구 00길 00			
직 업	부동산중개업소 직원	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 00부동산		
전 화	(휴대폰) 010-100-0000, (사무실) 02-200-0000			
이메일	leehl@<><.com			
기타사항	피고소인은 그 원임	고소인이	아파트 매입시 약	알게 된 부동산중개업소 직

3. 고소취지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4. 범죄사실

- 피고소인은 '00부동산'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.
- 피고소인은 2013. 3. 2.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,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소개로 매입한 00아파트 00호 계약금 1,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 날 피고소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.

5. 고소이유

- 고소인은 00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,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 길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직원으로서, 고소인이 00아파트 00호 를 위 00부동산을 통하여 매입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.
- 고소인은 2013. 2. 초순경 00부동산에 아파트 구입 문의를 하였으며, 2013. 2. 25.경 00부동산 직원이던 피고소인을 통하여 00아파트 00호를 금 0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아파트 소유자 000과 체결하였습니 다.
- 계약 당시 계약금을 2013. 3. 2. 00부동산에서 소유자에게 직접 주기로 하였는데 마침 그 날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소유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고소인에게 소유자에게 전해달라며 계약금 1,000만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.
-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, 고소인은 수일 후 아파트 소유자와 함께 피고소 인을 만나 추궁하니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 피고소인의 00카드 연체 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였다고 횡령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.
-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계약금 상당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 였으나 자신은 현재 돈이 없다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다 고 하기에 고소에 이르렀습니다.



6. 증거자료

- □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.
-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.
 - ☞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
- 7.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

① 중복 고소 여부	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□ / 없습니다 ■
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	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 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□ /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■
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	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■ / □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□

※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. 3. 15. 00법원에 2006가단000호로 00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음

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,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

2013년9월5일고소인김 갑 동 (인)

○○경찰서 귀중

별지 : 증거자료 세부 목록



1. 인적증거

성 명	김00	주민등록번호	6△△△	△△ -	××××××
주 소	직장 : 서울 00구 00길 00 00빌딩 00호			직업	00부동산중개 사무소 대표
전 화	(휴대폰) 010-100-0000 (사무실) 02-100-0000				
입증하려는 내용	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(인으로부터 받은 사실	00아파트를 중개하고	2, 2006. 3. 2.	계약금	000만원을 고소

성 명	∘]00	주민등록번호	5△△△	ΔΔ -	××××××
주 소	자택 : 서울 00구 00길 00 직장 : 서울 00구 00길 00상사			직업	00상사 이사
전 화	(휴대폰) 010-200-0000 (사무실) 02-100-0000				
입증하려는 내용	00아파트 00호 소유자이 는 것을 고소인과 같이 들		소인이 신용카드	대금채	무에 사용하였다

2. 증거서류

순번	증거	작성자	제출 유무
1	부동산매매계약서(사본)	피고소인	■ 접수시 제출 □ 수사 중 제출
2	예금통장(사본)	고 소 인	■ 접수시 제출 □ 수사 중 제출
3	보관증(사본)	피고소인	■ 접수시 제출 □ 수사 중 제출

※ 예금통장 사본은 고소인이 계약금 1,000만원을 인출한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관증 사본은 피고소인이 계약금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증거로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것임(증거서류 원본은 고소인이 가지고 있음)



3. 증거물

순번	증거	소유자	제출 유무
1	피고소인의 명함(사본)	고소인	■ 접수시 제출 □ 수사 중 제출
2			□ 접수시 제출 □ 수사 중 제출
3			□ 접수시 제출 □ 수사 중 제출

4. 기타 증거

○ 없음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7년(□공소시효일람포 ^^			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※ 아래(2) 참조 (형법 361조, 328조)		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355조1항/검찰 권장 표준 서식			
범죄성립 요 건	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					
형 량	· 5년 이하의 징역 · 1,500만원 이하의 벌금 (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: 형법 358조)			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(항고)			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(단,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"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)

- ※ (2)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
 - 1. 직계혈족 ,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
 - 2.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

3.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